

## ◆양주시 장흥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◆

---

- 전문위원 이 재호 입니다.
- 「양주시 장흥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」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.
- 본 조례안은 시장이 2006년 4월 12일 제출하였으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2월 21일 간담회시 사전설명을 마친 안건이 되겠으며 특히, 제138회(2005. 4. 11) 임시회에 상정되어 본회의 심의 중 철회한 안건입니다.
-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 및 내용은 앞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.

### □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

관광객이 장흥관광지내 밤나무숲 공원 및 취사장 주변, 하천변에서 천막을 설치 사용함으로 각종 쓰레기 발생 등 관리비용이 증가하여, 개인용 천막설치 사용료 및 경형차 주차료를 신설하고자 함.

## □ 개정하는 내용

-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규정에 의하여 조례 제명을 “양주시장홍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”를 “양주시 장홍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”로 개정함(조례 제명)
- 용어의 정의 중 “소형차” 및 “중.대형차”의 정의를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1에 정하는바에 의하기 위하여 각각 삭제함( 안 제2조제7호 및 제8호)
- 주차료중 경형차의 주차요금(당일 1회 1,000원) 및 개인용 천막 사용료(소형 5,000원, 중형 7,000원, 대형 10,000원)를 신설함(안 제5조 별표2, 별표4)

## 【 검토결과 】

- 본 조례안은 장홍관광지내에서 천막을 설치 사용함으로 각종 쓰레기 발생 등 관리비용이 증가하여,
- 개인용 천막 사용료(소형 5,000원, 중형 7,000원, 대형 10,000원) 및 주차료중 경형차의 주차요금(당일 1회 1,000원)을 징수코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.

- 특히, 본 조례안은 제138회(2005. 4. 11)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, 이항원님께서 안 제5조 별표4에서 정한 개인용 천막 약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개인용만 징수하고 단체는 누락되었음을 지적하여 안건을 철회한 후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개인용 천막 약용료를 대형, 중형, 소형으로 구분하여 재 상정된 안건이 되겠습니다.
- 안 제5조관련 별표4에서 약용료 징수 기준을 개인용 천막에 한하도록 하고 있으며, 약용료 징수 후 몇 일간을 사용할 수 있는지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징수에 따른 이용객과의 다툼이 예상됩니다.
- 따라서 약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단체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1회 징수 후 이용가능일수(시간)도 함께 규정하여 약용료 징수에 따른 징수자와 이용자간의 다툼이 없도록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,

○ 안 제3조(징수구역)에서 징수구역의 범위를 「관광진흥법」 제 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관광지내로 한다고 규정되어있는 바, 현지 여건상 천막을 설치하고 야영할 수 있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야영료 징수 구역을 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,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.

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#### 별표4

#### 야영료(제5조관련)

개정안			수정안		
구분	금액	비고	구분	금액 (1일)	비고
<u>개인용천막</u>	소형5,000원	5인이하	<u>천막</u>	개정안과같음	개정안과같음
	중형7,000원	5-10인이하		개정안과같음	개정안과같음
	대형10,000원	10인이상		개정안과같음	개정안과같음